# 이주현 노무사 **「핵심정리 사회보험법」** 제9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(2024-04-26)

## P.36 표 내용 수정

〈기존〉

취득 · 상실	신고 노(2(21)	신고기한	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,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기간에 공단에 <mark>월평균보수를</mark> 통보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 한 것으로 봄
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

## 〈수정〉

취득 · 상실	신고 노@21		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,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기간에 공단에 <mark>월 보수액을</mark> 통보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
---------	------------	--	--

## P.61 표 내용 수정

〈기존〉

육아휴직급여액 노⑪⑬②	특례	18개월이내 자녀	출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부 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(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or 일부 겹치지 않는 경우 포함) (임신 이유로 육아휴직 하는 경	시작일 ~ 6개월까지 (분할지급×)	월 통상임금 (하한액 70만원. 상한액은 부모 각각 1개월 사용한 경우 200만원 ~ 6개월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달 부터 200만, 250만, 300만, 350 만, 400만, 450만)
			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봄)	<mark>4</mark> 개월 ~ 종료일	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

## 〈수정〉

육아휴직급여액 노⑪(32)	특례	18개월이내 자녀	출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부 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(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이 일부 겹치지 않는 경우 포함)	시작일 ~ 6개월까지 (분할지급×)	월 통상임금 (하한액 70만원. 상한액은 부모 각각 1개월 사용한 경우 200만원 ~ 6개월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달 부터 200만, 250만, 300만, 350 만, 400만, 450만)
			(임신 이유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봄)	<mark>7</mark> 개월 ~ 종료일	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

## P.115 표 내용 추가·수정

〈기존〉

	타법적용자(공무원연금법,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,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, 군인, 교직원, 별정우체국직원)
가입대상	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
제 <b>외자</b> 노⑪20	**노령연금특례규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
	**노령연금특례규정 ※ 1988.1.1.기준 45세 이상 60세 미만자(특수직종근로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)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수급요건(10년 이상 가입)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연금지급(특례노령연금)

# 〈수정〉

	타법적용자(공무원연금법,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,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, 군인, 교직원, 별정우체국직원)
710151141	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
가입대상 제외자	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
上⑪②	**노령연금특례규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
	**노령연금특례규정 ※ 1988.1.1.기준 45세 이상 60세 미만자(특수직종근로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)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수급요건(10년 이상 가입)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연금지급(특례노령연금)

# P.117 표 내용 수정

# 〈기존〉

		사망한 때	
		국적을 상실한 때	
		국외로 이주한 때	  의 다음날
		60세가 된 때	거 거급된 
	임의가입자	탈퇴신청이 수리된 때	
		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 체납한 때	
-101-1-1-1		사업장가입자or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	
가입자자격 상실시기 노⑪®2020		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	해당하게 된 날
- 다음날		(타 연금법적용,조기노령연금수급권취득 등)	
		사망한 때	의 다음날 (단, 탈퇴신청이 수리된 경우에는 임의계
		국적을 상실한 때	
		국외로 이주한 때	국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- 레다하는 다이 마이의 타티시청이 스키디
	임의계속가입자	탈퇴신청이 수리된 때	-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신청이 수리된 -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, 임의계속가입자가
		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 체납한 때	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 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자격 상실)

# 〈수정〉

		사망한 때	
	임의가입자	국적을 상실한 때	
		국외로 이주한 때	의 다음날
		60세가 된 때	
		탈퇴신청이 수리된 때	
		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 체납한 때	
가입자자격		사업장가입자or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	해당하게 된 날
사실시기 노(1)(8202)		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	
- 다음날		(타 연금법적용,조기노령연금수급권취득 등)	
	임의계속가입자	사망한 때	의 다음날 (단, 탈퇴신청이 수리된 경우에는 임의계
		국적을 상실한 때	
		국외로 이주한 때	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신청이 수리된
		탈퇴신청이 수리된 때	날보다 같거나 빠르고, 임의계속가입자가
		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 체납한 때	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 말일에 자격 상실)



# P.156 표 내용 추가·수정

# 〈기존〉

급여의 제한 (체납자에 대한 지급제한)	원칙노®	1개월 이상 보험료(소득월액보험료or세대단위 보험료)를 체납하면 완납할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## 〈수정〉

급여의 제한 (체납자에 대한 지급제한)	원칙노⑩	1개월 이상 보험료( <mark>보수 외</mark> 소득월액보험료or세대단위 보험료)를 체납하면 완납할때까지 그 <b>가입자 및 피부양자</b> 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## P.158 표 내용 수정

## 〈기존〉

부당이득의 징수	징수	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이준요양기관이보조기기판매업자이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<mark>금액의 전부이일부를</mark> 징수한다.
-------------	----	---

# 〈수정〉

부당이득의 징수	징수	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이준요양기관이보조기기판매업자이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<mark>금액을</mark> 징수한다.
-------------	----	--

# P.161 표 내용 추가·수정

## 〈기존〉

	직장가입자	보수월액보험료	보수월액 × 보험료율
임범니청그애	上679	소득월액보험료	소득월액 × 보험료율
월별보험료액	지역가입자	세대단위로 산정	
	노⑲	보험료부과점수 ×	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

# 〈수정〉

	직장가입자	보수월액보험료	보수월액 × 보험료율
	上679	보수의 소득월액보험료	<mark>보수외</mark> 소득월액 × 보험료율
월별보험료액		세대단위로 산정	
	지역가입자 노 <sup>(1)</sup>	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>	× 지역가입자 보험료율
		재산보험료부과점수 × 자	내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

3

# P.162 표 내용 추가·수정

# 〈기존〉

소득월액		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(보수외소득)이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,000만원) × 1/12 으로 산정	
보험료율 노23	원칙	1천분의 80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⇒ 1만분의 709(령§44)	
土ω	국외 업무종사자	50% 경감	
보험료부과점수	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정함,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⇒ 208.4원(령§44)		
上®		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<b>제한</b> 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나른 재산과 <b>달리</b> 정할 수 있다.	

# 〈수정〉

소득월액	직장가입자	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(보수외소득)이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(연간 보수외소득 - 2,000만원) × 1/12 으로 산정
	지역가입자	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
보험료율	직장가입자	1천분의 80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⇒ 1만분의 709(령§44) ⇒ 국외업무 종사 직장가입자는 정해진 보험료의 50%로 함
노성	지역가입자	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령으로 정함 ⇒ 208.4원(령§44)
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노®	목적으로 대통령령의 1 금융회사로부터 2주택도시기금을 7 받고 그 사실을 공대해당 대출금액을 대는 구택에 대한 부 하여야 하며, 필요한	대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단에 통보하는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시 제외 과점수 산정시 제외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가 신용정보, 대출금액등의 금융정보 등을 공단에 제출 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. 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



# P.162 표 내용 추가·수정

# 〈기존〉

	1110	직장가입자가 면제사유 해당시 보험료 면제
	내용	지역가입자가 면제사유 해당시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
면제	기간	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
		단, 급여정지 사유가 1일에 없어진 경우 및 가입자or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하지 않음

# 〈수정〉

	1110	직장가입자가 면제사유 해당시 보험료 면제
	내용	지역가입자가 면제사유 해당시 그 가입자의 <mark>소득월액 및 재산</mark>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
면제	기간	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단, 급여정지 사유가 1일에 없어진 경우 및 가입자이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
	기간	

## P.163 표 내용 추가·수정

# 〈기존〉

부담	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노(5)(6)(8)(9)(2)	직장가입자가 100% 부담		
납부의무 노(5)1617	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	직장가입자		
납부기한	다음달 10일까지(:	다음달 10일까지(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 납부 가능)		
上63	납입고지의 송달지	입고지의 송달지연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		

## 〈수정〉

부담	직장가입자의 <mark>보수외</mark> 소득월액보험료 노(6)(6)(8)(9)(2)	<b>직장가입자가 100%</b> 부담	
납부의무 노(5)(6)(7)	직장가입자의 <mark>보수외</mark> 소득월액보험료	직장가입자	
납부기한 노⑤②		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 납부 가능) 지연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	

5



# P.165 표 내용 추가·수정

## 〈기존〉

		자료제공	공단은 보험료징수or공익목적 위해 필요한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료제공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or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·체 납액·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(체납등자료)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 피
자료제공	원칙	자료제공 대상자	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·연체금·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 상인 자 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·연체금·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 상인 자 ②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
	자료제공 제외 (령\$47)	② 체납자기         받고 그         ③ 체납자기         처했을 대	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or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· 재해or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or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입거나 중대위기에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등 자료를 아니한다.

## 〈수정〉

		자료제공	공단은 <mark>보험료징수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or</mark> 공익목적 위해 필요한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료제공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or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·체 납액·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(체납등자료)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 可
자료제공	원칙	자료제공 대상자	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·연체금·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 상인 자 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·연체금·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 상인 자 ②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
	자료제공 제외 (령§47)	② 체납자기         받고 그         ③ 체납자기         처했을 대         제공하지	보험료 <mark>나 부당이득금</mark>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or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· 재해or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or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입거나 중대위기에 대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등 자료를 아니한다. 문항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
## P.169 표 내용 추가·수정

## 〈기존〉

금융정보등의 제공	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자는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고,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함
〈수정〉	
금융정보등의 제공	공단은 지역가입자의 <mark>재산</mark>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

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자는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고,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함

6

### P.170 표 내용 추가·수정

〈기존〉

업무정지 기간
---------

### 〈수정〉

	업무정지	기간	그 요양기간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
			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.

### P.190 OX문제 내용 추가·수정

〈기존〉

041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다.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1천분의 14이다.

〈수정〉

041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다.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<mark>고용보험료율은</mark> 1천분의 14이다. ( )

P.207 192번 문제 삭제

192 노무제공사업의 시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P.285 29번 해설 수정

〈기존〉

29 다만,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수급자격 외에 추가로 1)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<mark>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</mark>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···

〈수정〉

29 다만,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수급자격 외에 추가로 1) 수급자격 인정신청일<mark>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</mark>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···

### P.313 86번 해설, 답 수정

〈기존〉

86 ② 위촉위원(근로자대표, 사용자대표, 공익대표)의 임기는 2년,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고위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로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(고보령 §1의4)

정답 ≫ 85 ② 86 ② 87 ⑤

〈수정〉

① 위촉위원(근로자대표, 사용자대표, 공익대표)의 임기는 2년,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고위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로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(고보령 §1의4)

정답 ≫ 85 ② 86 ① 87 ⑤

### P.332 150번 문제 수정

〈기존〉

150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( )

〈수정〉

150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( )

### P.364 34번 문제 정답 수정

〈기존〉

정답 > 33 ④ 34 ①, ②

〈수정〉

정답 >> 33 ④ 34 ②

### P.392 92번 문제 정답 및 해설 수정

〈기존〉

92 기. 곱한 금액 ⇒ 합한 금액 (산재법 별표3)

∟. 100분의 45 ⇒ 100분의 47 (산재법 별표3)

정답 >> 91 ③ 92 ①

### 〈수정〉

92 기. 곱한 금액 ⇒ 합한 금액 (산재법 별표3)

\_\_. 100분의 45 ⇒ 100분의 47 (산재법 별표3)

정답 ≫ 91 ③ 92 ②

### P.411 4번 문제 해설 수정

〈기존〉

- 04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적용제외자이며,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(연금법 §8, §9).
  - ④ 국민연금가입은 강제가입이 원칙이므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. 다만, 강제가입자가 아닌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<mark>3개월</mark> 이상 계속 체납하면 자격을 상실한다(연금법 §12, §13).

### 〈수정〉

- 04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적용제외자이며, 국민연금 기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(연금법 §8, §9).
  - ④ 국민연금가입은 강제가입이 원칙이므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. 다만, 강제가입자가 아닌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<mark>6개월</mark> 이상 계속 체납하면 자격을 상실한다(연금법 §12, §13).

### P.462 90번 문제 해설 수정

〈기존〉

090 (×) <mark>응</mark>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⇒ <mark>응</mark>하여야 한다.

〈수정〉

090 (×) <mark>홍보</mark>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⇒ <mark>홍보</mark>하여야 한다.

### P.489 48번, 49번 문제 정답수정

〈기존〉

정답 ≫ <mark>46 ④ 47 ①</mark>

〈수정〉

정답 ≫ 48 ⑤ 49 ⑤